|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상운수조례 실시세칙** 2003년 1월 20일 교통부 반포, 2013년 8월 29일 교통운수부《<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이하 《해운조례》라 약칭함)의 규정에 의해 본 실시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교통운수부와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마땅히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의 규정에 의해 공정, 고효율, 편리의 원칙에 따라 국제 해상운수 활동 및 국제 해상운수와 관련되는 보조성의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공정경쟁을 권장하며 불공정경쟁을 금지해야한다. **제3조**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에서 지칭하는 하기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운수업무란 국제선박운수경영자가 자사보유 선박 또는 경영하는 선박, 선창을 이용하여 국제해상운수와 여객운수서비스 및 상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선박, 승객 또는 화물을 둘러싸고 전개하는 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관련 협의, 선창의 주문 접수, 운임의 협상과 수취, B/L 및 관련 운수 증빙자료의 발행, 화물의 하역, 보관, 화물의 인수인계, 중개운수와 선박 수출입항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2. 국제선박운수경영자란 중국의 국제선박운수 경영자와 외국의 국제선박운수 경영자를 포함한다. 그중 중국 국제선박운수경영자는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에 의해 《국제선박운수경영자 허가증》을 취득하고 국제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하는 중국기업법인을 말하고 외국 국제선박경영자는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국 항구의 국제 선박운수 수출입업무를 경영하는 외국기업을 말한다. 3. 국제정기선 운수업무란 자사보유 선박 또는 경영하는 선박을 이용한 또는 《해운조례》 제16조 제3관의 방식으로 고정 항구간의 정기 국제해상화물 또는 여객운수 제공을 말한다. 4. 무선운수 업무란 《해운조례》제7조 제2관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기 업무의 완성을 위한 화물운수와 관련되는 하기 활동을 포함한다. 1) 운수자의 신분으로 운수 위탁자와 국제화물운수 계약 체결 2) 운수자의 신분으로 화물 접수, 교부 3) B/L 또는 기타 운수 증빙서류 발송 4)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보수 수취 5) 국제 선박운수 경영자 또는 기타 운수방식의 경영자와 화물운수에 필요한 선창 주문과 탁송수속 취급 6) 항구에서 항구까지의 운임 또는 기타 운수비용 지불 7) 컨테이너의 분리, 조합업무 8) 기타 관련 업무 5. 무선(無船) 운수업무경영자란 중국의 무선(無船) 운수업무경영자와 외국의 무선(無船) 운수업무경영자를 말한다. 그중 중국의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는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에 의해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격을 취득한 중국 기업법인을 말하고 외국의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란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한,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해 중국 항구의 수출입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외국 기업을 말한다. 6. 국제선박대리경영자란 중국 법률에 의해 설립한, 《해운조례》 제29조 규정의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기업법인을 말한다. 7. 국제선박관리경영자란 중국법률에 의해 설립한, 《해운조례》 제30조 규정의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기업법인을 말한다. 8. 국제해운화물 창고보관업무 경영자란 중국 법률에 의해 설립한, 해운화물의 창고보관, 재고관리 및 화물의 정리, 분장(分裝), 포장, 분견(分遣)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법인을 말한다. 9. 국제해운 컨테이너부두와 퇴적장 업무 경영자란 중국법률에 의해 설립한, 해운화물컨테이너의 조합, 보관, 청결, 수리 및 컨테이너화물의 창고보관, 조합, 분견(分遣)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법인을 말한다. 10.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중국법률에 의해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국인 독자기업을 말한다. 11. 외국인 상주 대표기구란 외국기업 또는 기타의 경제조직이 중국 내에 설립한, 파출 기관을 위해 선전홍보, 추천, 중개, 자문과 연락활동을 하는 비 영업성의 기관을 말한다. 12. 기업의 상업등기 서류란 기업등기기관 또는 기업 소재국의 관련 당국이 발급한 기업 영업허가증 또는 기업의 설립증명서류를 말한다. 기업의 상업등기서류가 복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등기기관의 복사본에 대한 확인 또는 복사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공증서류가 있어야 한다. 13. 전용 영수증이란 국가세무총국이 통일 발행한 영수증을 말한다. 이것은 지불인이 국제선박운수경영자 또는 그 대리인, 무선운수경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운임 또는 기타의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명이다. 여기에는 《국제해운업 운수전용영수증》과 《국제해운업 선박대리 전용영수증》을 포함한다. 14. “정기선 공회(公會)협의”란 UN “1974년 정기선 공회 행동수칙 공약” 정의에 부합하는, 정기선 공회 성원간 및 정기선 공회 간이 체결한 각종 협의를 말한다. 15. 운영협의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국제 정기선 운수경영자가 운임을 안정, 통제하기 위하여 체결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항로에 선박 운수 능력을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협의 및 기타의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의 공동행위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술한 성격의 회의 내용 요록, 두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가 운수효율의 제고를 위해 체결한 선박의 공동사용, 항구시설의 공동사용 및 기타의 합작경영협의와 각종 연맹협의, 연합경영성의 협의가 포함된다. 16. 운수가격협의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간에 체결한 비용수취 항목 및 운임비율, 운수 가격 또는 부대비용 등 내용의 협의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기 내용의 회의 요록을 포함한다. 17. 운수가격 공고란 국제정기선 운수 경영자와 무선(無船)운수경영자가 운수 가격 부에 명시한 운수가격을 말한다. 운수 가격 부는 운수가격, 운수가격규칙, 운수자와 운수위탁자가 마땅히 준수해야하는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8. 협의 운수가격이란 국제정기선 운수 경영자와 화물주, 무선운수 경영자가 약정한 운수가격을 말한다. 여기에는 운수가격 및 관련 요소를 포함한다. 협의 운수가격은 계약 또는 협의 형식으로 서면 체결해야 한다. 19. 업무종사 자격증명서류란 피 증명인이 3년 이상의 국제해상운수 또는 국제 해상운수 보조성의 경영활동 경력이 있다는 개인 이력서를 말한다. 개인 이력서는 마땅히 공증 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제2장 국제해상운수 및** **그 보조성 업무 경영자** **제4조** 중국 내에 국제선박 운수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중국 기업법인이 국제선박 운수업무의 경영을 신청하려면 마땅히 《해운조례》 제5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교통운수부가 공고한 국제해운시장 경쟁상황과 국가의 국제해상운수업 발전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마땅히 정부 홈페이지와 기타의 적당한 매체를 통해 적시에 국제해운시장 경쟁상황과 국가의 국제해상운수업 발전 정책을 공고해야한다. 상술한 상황과 정책은 미 공고 상태에서 신청 거부이유가 될 수 없다. **제5조** 중국 내에 국제선박 운수업무 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중국 기업법인이 국제선박 운수업무의 경영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운수부에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하며 아울러 신청서류를 동시에 기업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에 보고, 송부해야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연구보고서, 투자 협의 3. 신청인의 기업 상업등기 서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 투자자의 상업 등기서류 또는 신분증명) 4. 선박소유권 증명서, 국적 증명서와 법정 검증 증명서류의 부본이나 복사본 5. B/L, 승선권 또는 연합운수 증명서류 6. 교통운수부 규정의 고급업무관리요원의 업무종사 자격 부합 증명서류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 의견을 제출하며 아울러 관련 서류 접수 일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심사결과의견을 교통운수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신청인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신청서류 일체 완비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해운조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를 실시하며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를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국제선박운수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할 경우에는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제6조** 중국 국제선박 운수경영자가 중국 내에 지사를 설립 하고자하는 경우, 본 실시세칙 제5조의 규정된 절차를 적용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 보고서 3. 모회사의 상업등기서류 4. 모회사의 《국제선박 운수경영 허가증》 부본 5. 모회사의 당 지사 경영범위에 대한 확인 서류 6. 교통운수부에서 요구하는 고급 업무 관리요원의 업무종사 자격 부합 증명서류 중국 국제선박 운수경영자의 지사는 모회사가 소유하거나 또는 경영하는 선박에 선박수출입항 수속, 항구작업배치, 선창 주문 접수, B/L발급, 운임수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중국 내에 기업법인을 설립하여 국제선박 대리업무를 경영하거나 또는 중국의 기업법인이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고정 영업장소와 필요한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고급 업무관리요원 중 최소 2인은 3년 이상 국제 해상운수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국제 선박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마땅히 개업 후 30일 내에 영업장소 증명서류와 관련 인원의 자격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교통운수부에 등기, 보고해야 한다. 국제 선박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기업종보를 변경하거나 또는 국제 선박대리 경영활동에 더 이상 종사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중지한 15일 내에 교통운수부에 등기, 보고해야 한다.**제8조** 중국 기업법인이 국제선박 관리업무 또는 중국 내에 국제선박 관리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업무 경영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 보고서, 투자협의서 3. 신청인의 상업등기서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 투자자의 상업등기서류 또는 신분증명) 4. 고정 영업장소의 증명서류 5. 《해운조례》제9조 제1항 규정의 고급업무 관리인원의 종업자격증명문서; 6. 《해운조례》제9조 제2항 규정 인원의 선장, 기관장의 적임 증명서류 복사본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신청인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신청서류 일체 완비 일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류가 진실하고 아울러 《해운조례》 제11조 규정에 부합하면 자격등기를 실시하고 《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 등기증》을 발급하며 서류가 진실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운조례》제11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를 실시하지 않으며 또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 등기증》을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서 기업 등기수속을 하며 세무기관과 외환관리부문이 지정한 은행에서 관련 수속을 한다. **제9조** 국제 선박 관리경영자가 중국 내에 설립한 지사가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해운조례》제9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아울러 《해운조례》제10조와 본 실시세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등기 신청서류는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보고서 3. 모회사의 상업등기서류 4. 모회사의 《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 등기증》 부본 5. 모회사가 지사 경영범위를 확정한 확인서류 6. 경영장소 증명서류 7. 《해운조례》 제9조에 규정한 인원의 업무종사 경력 또는 자격 증명서류. **제10조** 국제 선박운수경영자가 중국항구의 수출입 국제정기선 운수업무 경영을 신청할 경우, 마땅히 교통운수부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해운조례》제17조에 정한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마땅히 《해운조례》제17조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한다. 등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격 등기증》을 발급한다. 신청서류가 진실하지 못하고 완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아울러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국제 선박운수경영자가 중국항구 수출입 국제정기선 운수업무 자격을 취득한 후 교통운수부는 정부 홈페이지에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 명칭 및 B/L 양식을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가 B/L등기를 신청할 경우, 마땅히 교통운수부에 B/L등기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송부하며 동시에 기업소재지 또는 외국 무선(無船)업무경영자가 지정한 연락기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에 신청서류를 보고, 송부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분석보고서 3. 기업의 상업 등기서류 4. B/L 양식 5. 보증금 납입 은행의 증명서류 복사본 신청인이 외국의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인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 제25조 규정의 지정 연락기관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하며 아울러 신청서류 접수 일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관련 심사의견을 교통운수부에 보고, 송부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신청서류 일체 완비 일로부터 15일 내에 《해운조례》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한다. 심사에 합격하면 B/L등기를 실시하고 아울러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 등기증》을 발급하며 불합격일 경우에는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중국의 신청인은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 등기증》을 취득하고 아울러 원 기업등기기관에서 기업의 필요한 등기수속을 한 후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의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외국법률에 의해 경영자격을 취득하고 아울러 합법적인 재무책임보장이 있는 경우,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에 의해 중국 항구의 수출입 무선(無船)운수업무 취급을 신청할 시, 중국 내 은행에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외국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이행 부당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 또는 벌금의 지불을 위하여 당 외국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의 정부주관부문과 중국 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마땅히 재무책임보증실현 방식으로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13조** 중국 항구에서 국제정기선 운수업무를 전개하지 않지만 중국 내에서 화물을 취급하고, B/L 또는 기타 운수 증명서류를 발급하며, 운임을 수취,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의 선박선창을 임대하여 중국항구의 수출입 국제화물 운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가 제공하는 지선(支線)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항구 화물을 외국에 중개 운수하는 경우, 마땅히 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해야한다. 단, 《해운조례》 제16조 제3관에서 정한 상황은 제외한다. **제14조** 중국의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의 중국 내 지사는 마땅히 《해운조례》제8조 제2관의 규정에 의해 보증금을 납입하고 아울러 본 실시세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고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 등기증》을 취득해야한다. 등기 신청 시,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모회사의 기업 상업등기서류 3. 모회사의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 등기증》부본 4. 모회사에서 확인한 당해 지사 경영범위 확인 서류 5. 보증금 납입 은행의 증명서류 복사본 **제15조**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B/L등기를 신청할 경우, B/L의 지정인 명칭과 신청인 명칭이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할 경우, 신청인은 마땅히 당 B/L이 확실히 신청인이 제작, 사용하는 B/L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이 B/L 등기 신청으로 인한 운수자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서면 성명을 첨부해야 한다. **제16조** 무선운수업무 경영자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B/L을 사용할 경우 각 B/L은 마땅히 등기해야 한다.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와 무선운수업무 경영자의 등기 B/L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마땅히 새로운 B/L 사용 일로부터 15일 내에 새로운 B/L 양식을 교통운수부에 등기,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 신청인이 보증금을 납입하고 아울러 B/L등기를 완료하여 무선 (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후 교통운수부는 정부 홈페이지에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 명칭 및 그 B/L 양식을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는 마땅히 법에 의해 교통운수부가 지정한 상업은행에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보증금을 납입하며 보증금 이자는 중국인민은행이 공고한 당좌예금이자로 계산한다. **제19조**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납입한 보증금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하기 상황을 제외한 보증금의 유용은 금지한다. 1. 무선운수업무경영자가 운수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이행하여 사법기관의 발효 판결문 또는 사법기관이 집행을 판결한 중재기관의 판결문에 의해 마땅히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2. 교통운수 주관부문으로부터 법에 의한 벌금부과 처벌을 받은 경우 전관 제1, 2항의 상황이 발생하여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해야하는 경우 법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무선운수업무 경영자의 보증금이 《해운조례》 규정의 액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교통운수부는 마땅히 서면으로 그 차액을 보충하도록 통지해야한다. 무선운수업무 경영자가 교통운수부의 서면통지 접수 일로부터 30일 내에 차액을 보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운수부는 마땅히 《해운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그 경영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20조**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교통운수부로부터 법에 의해 경영자격을 취소 당했거나 경영중지를 신청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경영을 중지할 경우, 교통운수부에 보증금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운수부는 마땅히 당 신청사항을 정부 홈페이지에 30일간 공시(公示)해야 한다. 공시(公示)기간 중, 관련 당사자는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본 실시세칙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 당 보증금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경우, 마땅히 상기 공시 기간 내에 사법기관으로부터 재산보전판정을 받아야 한다. 보증금 보전 일로부터 교통운수부의 《해운조례》에 의한 보증금계좌에 대한 감독절차는 결속된다. 관련 분쟁은 당사자 양측이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공시(公示)기간이 만료되어 전관 규정의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교통운수부는 마땅히 보증금 계좌개설은행에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의 보증금 및 이자 환불을 통지하고 아울러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의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 등기증》을 회수한다. **제21조** 중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중국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 국제선박 관리경영자는 하기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마땅히 원 자격 허가, 등기기관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1. 기업명칭변경 2. 기업의 이전 3. 출자인 변경 4. 휴업, 경영중지 기업명칭을 변경할 경우, 원 자격 허가, 등기기관은 관련 경영허가증 또는 경영자격 등기증을 교체한다. 기업이 경영을 중지할 경우, 마땅히 관련 허가, 등기증명을 원 허가, 등기기관에 교부해야 한다. **제22조**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 제4장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 외, 국제해운화물의 창고보관, 국제해운 컨테이너부두와 퇴적장 업무를 취급하는 경영자는 마땅히 상기 경영활동 종사 일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상황을 기업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제3장 국제해상운수 및 그 보조성** **업무 경영활동** **제23조**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가 신규 항로를 개항하거나 또는 기존 국제정기선 운수항로를 폐쇄하거나 또는 국제정기선 운수선박, 운행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마땅히 《해운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지정의 매체에 공고하고 아울러 규정에 따라 보고, 등기해야 한다. **제24조** 중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가 운영선박을 증가하고자하는 경우(선장과 선원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선박 임대 방식의 운영선박 증가 포함), 마땅히 운영에 투입하기 15일 전에 교통운수부에 보고, 등기하고 증명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증명서류에는 회사명칭, 등록지, 선박명칭, 선박국적, 선박유형, 선박적재량, 운영하고자 하는 항로를 명시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보고등기서류를 접수한 후 3일 근무일 내에 증명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25조** 중국 항구에서 국제정기선 운수업무를 전개하는 외국 국제선박 운수경영자 및 중국에서 대리인을 통해 중국항구 수출입화물 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는 마땅히 중구 내 연락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여 당 외국기업을 대표하여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이 정한 관리사항 및 법률사항에 관한 중국정부 관련부문과의 연락업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연락기관은 당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상주 대표기구일 수 있고, 또한 기타 중국 기업법인 또는 중국 내에 고정 주거지가 있는 기타의 경제조직일 수 있다. 위탁한 연락기관은 마땅히 교통운수부에 보고, 등기하고 아울러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연락기관 설명서에는 연락기관 명칭, 주소, 연락방식 및 연락 인을 명시해야 한다. 2. 위탁서 부본 또는 복사본 3. 위탁인과 연락기관의 협의서 부본 4. 연락기관의 공상등기 서류 복사본 연락기관이 당 외국기업의 중국 내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상주 대표기구 일 경우, 제1관 제2, 제3항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연락기관 또는 연락기관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땅히 변경사항 발생 일로부터 15일 내에 교통운수부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제26조** 어떤 단체나 개인도 무단으로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와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이미 등기한 B/L을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대리인을 통해 B/L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할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경영자격을 취득한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와 국제해운 보조업무 경영자에게 상기 사항의 대리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전관 규정의 경영자는 B/L등기를 하지 않고 아울러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은 무선운수업무 경영자의 위탁을 접수하여 B/L 발급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가 화물 주,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와 운수가격을 협의할 경우, 마땅히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협의운수가격은 마땅히 B/L 또는 관련 증명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제29조** 국제 선박운수 경영자는 B/L등기를 하지 않고 아울러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은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가 제공한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접수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국제 정기선운수 경영자가 대리인에게 선창주문 접수, B/L발급, 운임 대리수취 등의 업무를 위임할 경우, 위탁을 받은 대리인은 법에 의해 설립한 국제선박대리경영자여야 한다. **제31조** 국제 정기선운수 경영자와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는 중국내의 선박대리인, B/L발행 대리인을 교통운수부 지정의 매체에 공고해야한다. 공고사항은 대리인 명칭, 등록지, 주소, 연락방식을 포함한다. 대리인이 변동되었을 경우, 마땅히 대리협의서가 발효되기 7일전에 상기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국제 정기선운수 경영자,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는 마땅히 적시에 대리사항 공고 매체명칭을 교통운수부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제32조** 국제 선박운수 경영자간에 체결한 중국항구에 관련되는 정기선공회(公會)협의서, 운영협의서, 운수가격협의서 등은 마땅히 체결 일로부터 15일 내에 하기 규정에 의해 교통운수부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1. 정기선공회협의서는 정기선공회가 중국 항구 수출입 해상운수 업무를 경영하는 모든 성원들을 대표하여 보고, 등기한다. 정기선공회는 보고, 등기 시, 마땅히 동시에 당 공회의 성원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2. 국제 선박운수 경영자간에 체결한 운영협의서, 운수가격협의서는 협의체결에 참여한 국제 선박운수 경영자가 각자 보고, 등기한다. **제33조** 하기 경영자의 중국 내에서의 운임수취, 운임 대리수취 및 기타 관련비용 수취는 마땅히 지불인에게 전용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1. 중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및 그 지사 2. 중국 무선운수업무 경영자 및 그 지사 3. 국제선박 대리경영자 및 그 지사 4. 《해운조례》제32조에 정한 기업 전관에 나열한 경영자는 마땅히 회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에서 전용영수증 사용증명을 취득한 후 회사소재지의 세무기관에 전용영수증 수령 신청을 제출한다. 국가세무총국이 별도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4조** 국제 선박관리 경영자는 마땅히 계약의 약정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선박안전과 오염방지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5조** 중국 항구 수출입 국제정기선 운수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선박운수 경영자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국제운수업 정보표》(항운회사 기본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국제운수업 정보표(表)》(항운회사 컨테이너 수출 重箱 운수량),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국제운수업 정보표(表)》(항운회사 컨테이너 수입 重箱 운수량)를 작성하고 당해 연도 3월 31일전에 교통운수부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외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의 상기 서류는 위탁을 받은 연락기관이 보고, 송부한다. **제36조** 중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국제선박대리 경영자 및 국제 컨테이너 운수항 경영자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국제운수업 정보표(항운회사 기본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운수업 정보표(국제선박대리)》와 《중화인민공화국 해상운수업 정보표(해상 컨테이너 통과량)》을 각각 작성하고 당해 연도 3월 15일 전에 회사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에 보고, 송부해야 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마땅히 상기 정보표 및 그 정보묶음을 당해연도 3월 31일전에 교통운수부에 보고, 송부해야 한다. **제37조** 국제 선박대리 경영자, 국제선박관리 경영자, 국제해운화물 창고보관업무 경영자 및 국제 컨테이너부두와 퇴적장 업무 경영자는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가격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 공정경쟁을 방해한다. 2. 회계장부 외 비밀리에 고객에게 커미션을 제공, 업무를 청부한다. 3. 우위지위를 남용, 교역 당사자의 국제해운 보조업무 경영자의 자주(自主) 선택을 제한하거나 또는 관련 산업의 독점지위를 이용하여 교역 당사자를 유도, 동업(同業)경쟁을 배척한다. 4. 기타의 부당 경쟁행위 **제38조** 외국 국제선박 운수 경영자 및 외국 국제해운 보조기업의 상주 대표기구는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된다. 1. 국외의 모회사(母會社)를 대표하여 선창주문을 접수하거나 모회사 B/L 또는 관련 증명서류 발급 2. 국외 모회사(母會社)를 위해 결산 또는 운임 수취 및 기타 비용 수취 3. 국외 모회사(母會社) 또는 모회사(母會社)가 《해운조례》제33조 규정에 의해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의 어음 발행 4. 탁송자의 신분으로 국제 정기선운수 경영자에게 화물운수 위탁   5. 외국기업 상주(常駐)대표기구의 명의로 고객과 업무계약 체결 **제4장 국제해상운수 및 그 보조성**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경영** **제39조** 중외합자, 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하려면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을 통해 교통운수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보고서 3. 합자 또는 합작 협의서 4. 투자자의 기업 상업등기서류 또는 신분 증명 5. 교통운수부가 정한 고급업무관리요원의 업무종사 (從業)자격 부합 증명서류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완벽하게 갖춘 서류 일체 접수 일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신청서류와 의견을 교통운수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상기 서류와 의견 접수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해운조례》 제32조 제2관, 제3관, 제4관의 규정 및 교통운수부가 공고한 국제해운시장 경쟁상황과 국가의 국제해상운수업 발전정책에 근거하여 심사를 실시,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결정을 할 경우, 허가서류를 발급하고 불허가 결정을 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아울러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국가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심사허가 수속을 받는다. 필요한 수속을 취득한 후 마땅히 관련 부문의 기업설립허가 서류와 본 실시세칙 제5조 제1관 제4-6항의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본 실시세칙 제5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교통운수부에서 《국제선박운수 경영허가증》을 수령한다. **제40조** 《해운조례》 제33조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마땅히 교통운수부와 대외무역 합작부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1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을 통해 교통운수부에 본 실시세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한 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완벽하게 갖춘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10일 근무일 내에 관련 서류 및 의견을 교통운수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상기 전달, 보고 서류와 의견을 접수한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본 실시세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허가서류를 발급하고 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국가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유관 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 관한 필요한 심사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필요한 허가서류를 취득한 후에는 유관 부문의 기업설립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교통운수부에서 《국제선박대리경영자격등기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제42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 선박관리업무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을 통해 교통운수부에 본 실시세칙 제8조 규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완벽하게 갖춘 서류 일체를 접수한 후 마땅히 10일 근무일 내에 관련 서류 및 의견을 교통운수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마땅히 상기 서류와 의견 접수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해운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결정을 할 경우, 허가서류를 발급하고 불허가 결정을 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국가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관련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 필요한 심사허가 수속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심사허가수속을 취득한 후 마땅히 관련 부문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본 실시세칙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에서 등기수속을 하고 《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 등기증》을 수령한다. **제43조** 국제해운 화물 창고보관업무를 취급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정된 영업장소 2. 경영범위에 필요한 창고시설이 있어야 한다. 3. 고급업무관리인력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조건 **제44조** 국제해운 컨테이너부두 및 퇴적장 업무를 취급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정된 영업장소 2. 경영범위에 필요한 차량, 하역기계, 퇴적장, 컨테이너검사설비 시설 3. 고급업무관리인력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3년 이상의 관련 업무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조건 **제45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해운화물 창고보관업무 또는 중외합자,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국제 컨테이너부두와 퇴적장 업무를 경영하려면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을 통해 교통운수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 보고서 3. 합자 또는 합작 경영 협의서 4. 투자자의 기업 상업등기서류 또는 신분증명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완벽하게 갖춘 서류 일체를 접수한 후 마땅히 10일 근무일 내에 관련 서류 및 의견을 교통운수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마땅히 상기 서류와 의견 접수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본 실시세칙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결정을 할 경우, 등기수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필요한 허가서류를 발급하며 불허가 결정을 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국가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부분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수속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허가서류를 취득한 후 교통운수부에서 등기수속을 하며 《국제 해운 보조업 경영 자격 등기증》을 수령한다. **제46조** 국제해운 창고보관업무 경영자, 국제 컨테이너부두와 퇴적장 업무경영자는 반드시 교통운수부에서 발급한 자격등기증명서류를 소지하고 감독관리지(監管地) 세관에서 등기수속을 받아야 세관 감독관리하의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다. **제5장 조사와 처리** **제47조**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국제해상운수업무 경영자, 국제해운보조업무 경영자가 《해운조례》 제35조와 본 실시세칙 제38조의 상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운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교통운수부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사청구 시 마땅히 서면조사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진술하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조사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조사 신청 일로부터 60일 내에 조사 실시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1. 조사신청이유가 불충분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교통운수부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아울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충한 후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평가결론에 의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해운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자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교통운수부는 마땅히 관련 서류와 평가결론을 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문과 가격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48조** 조사의 실시는 교통운수부가 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문과 가격부문(이하 조사기관이라 약칭함)과의 합동으로 공동 성립한 조사팀에서 실시한다. 조사기관은 마땅히 조사팀의 구성인원, 조사사유, 조사기한 등 상황을 피 조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 조사인은 마땅히 조사 통지 송달 후 30일 내에 조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피 조사인은 조사팀 구성원이 조사신청인, 피 조사인 또는 조사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피신청을 제출한 권한이 있다. 조사기관은 회피신청이 성립된다고 판단하면 마땅히 조사팀 구성원에 대한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49조** 피 조사인은 조사 접수 시 마땅히 조사팀의 요구에 의해 관련 데이터, 자료 및 서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상업비밀에 속할 경우에는 마땅히 조사팀에 제출해야한다. 조사팀은 서면형식으로 기록, 차후 조사용으로 한다. 조사기관과 조사요원은 피 조사인의 상업비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피 조사인은 조사요원이 그 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에 신고할 권한이 있다. **제50조** 조사기관은 피 조사인의 “정상, 합리적인 가격수준보다 낮은 운수가격”에 대한 판단 시, 마땅히 하기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1. 동일 업종의 다수 경영자의 운수가격수준 및 피 조사인과 동등 규모를 가진 경영자의 운수가격 수준 2. 피 조사인이 당 운수가격수준을 실시한 이유, 여기에는 원가구성, 관리수준과 이익, 결손 상황 등이 포함된다. 3. 특정 경쟁적수를 대상으로 하고 아울러 경쟁적수 배척을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 **제51조** 조사기관의 “공정경쟁에 대한 손해” 또는 “교역대상에 대한 손해”에 대한 판단은 마땅히 하기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1. 탁송인의 운수자에 대한 자유 선택권 방해 2. 화물의 정상 운수에 대한 영향 3. 장부 외의 비밀 커미션으로 화물을 청부, 시장 경쟁 규칙을 외곡 **제52조** 조사기관은 조사에 대한 결론을 제출하기 전 전문가자문회의를 소집, “공정경쟁에 대한 손해” 또는 “교역대상에 대한 손해” 정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초빙한 전문가는 조사신청인, 피 조사인과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53조** 조사가 끝나면 조사기관은 마땅히 조사 결론을 내리고 아울러 서면으로 조사 신청인과 피 조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기본 사실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조사기관은 마땅히 조사중지를 결정해야 한다. 2. 기본사실은 존재하나 시장공정경쟁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 조사기관은 피 조사인에 대한 금지,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기본사실이 명확하고 아울러 시장공정경쟁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한 경우, 조사기관은 마땅히 《해운조례》의 규정에 의해 피 조사인에 대한 금지,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4조** 조사기관은 금지, 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마땅히 당사자에게 청문회소집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회소집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조사기관의 통지 송달 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청문회요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회권리를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5조** 본 실시세칙 제38조에 나열한 상황에 대한 조사실시 시, 조사팀 성원 중에는 마땅히 피 조사인에게 자격 등기를 실시한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운수 주관부문의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실시세칙 제38조 제3항에 나열한 위법행위가 있고 아울러 교역당사자 또는 동업경쟁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한 경우, 조사기관은 일정 기간 내 업무량 확대를 제한하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법률 책임** **제56조**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의 규정을 위반, 마땅히 처벌을 가해야하는 경우, 교통운수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마땅히 《해운조례》제6장과 본 장의 규정에 의해 처벌을 가해야 한다. **제57조**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가 본 실시세칙 제39조 규정의 상황이 있을 경우, 교통운수부 또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관련 상황을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보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해운조례》제52조 제2관의 규정에 의해 처벌을 가한다. **제58조** 정기선 공회협의서, 운영협의서와 운수가격협의서 또는 국제선박대리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보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운수부는 《해운조례》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실시세칙 제7조, 제32조에서 규정한 보고 등기인에 대해 처벌을 가한다. 정기선공회가 규정에 따라 보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회구성원에 대해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제59조** 조사요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피 조사인의 비밀을 누설 한 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하며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여 형법에 저촉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60조**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이 정한 허가, 등기사항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은 위탁사항 취급 시, 마땅히 수권 위임서를 제공해야한다. 외국신청인 또는 투자자가 제공한 공증서류는 마땅히 신청인 또는 투자자 소재국 공증기관 또는 공인 변호사사무소에서 제공한 것이어야 한다. 본 실시세칙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는 마땅히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문자를 사용할 경우, 마땅히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61조**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 규정의 등기, 보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보고 등기 방식과 방법은 마땅히 교통운수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2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내륙지역에서 국제해상운수와 국제해상운수 관련 보조성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해운조례》 제4장과 본 실시세칙 제4장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3조** 《해운조례》 제20조 규정의 공고 운수가격과 협의 운수가격의 구체적인 보고, 등기 방법은 교통운수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64조** 항구 국제해운화물의 하역, 항구 내 국제 해운화물의 창고보관업무와 국제해운 컨테이너부두와 퇴적장 업무에 대한 경영은 국가의 관련 항구관리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 본 실시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운수부가 1985년 4월 11일 공고한 《교통부 국제해운선박회사에 대한 잠정 관리방법》, 1990년 3월 2일 공고한 《국제선박대리 관리규정》, 1990년 6월 20일 공고한 《국제 정기선운수관리규정》, 1992년 6월 9일 공고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국제컨테이너운수 관리규정 실시세칙》과 1997년 10월 17일 공고한 《외국수로(水路)운수기업 상주대표기구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2003年1月20日交通部发布；根据2013年8月29日交通运输部《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的决定》修正）**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以下简称《海运条例》）的规定，制定本实施细则。 　　**第二条** 交通运输部和有关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依照《海运条例》和本实施细则的规定，按照公平、高效、便利的原则，管理国际海上运输经营活动和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经营活动，鼓励公平竞争，禁止不正当竞争。 　　**第三条** 《海运条例》和本实施细则中下列用语的含义是： 　　（一）国际船舶运输业务，是指国际船舶运输经营者使用自有或者经营的船舶、舱位，提供国际海上货物运输和旅客运输服务以及为完成这些服务而围绕其船舶、所载旅客或者货物开展的相关活动，包括签订有关协议、接受定舱、商定和收取运费、签发提单及其他相关运输单证、安排货物装卸、安排保管、进行货物交接、安排中转运输和船舶进出港等活动。 　　（二）国际船舶运输经营者，包括中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和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其中，中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是指依据《海运条例》和本实施细则规定取得《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经营国际船舶运输业务的中国企业法人；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是指依据外国法律设立经营进出中国港口国际船舶运输业务的外国企业。 　　（三）国际班轮运输业务，是指以自有或者经营的船舶，或者以《海运条例》第十四条第三款规定的方式，在固定的港口之间提供的定期国际海上货物或旅客运输。 　　（四）无船承运业务，是指《海运条例》第七条第二款规定的业务，包括为完成该项业务围绕其所承运的货物开展的下列活动： 　　（１）以承运人身份与托运人订立国际货物运输合同； 　　（２）以承运人身份接收货物、交付货物； 　 （３）签发提单或者其他运输单证；　　（４）收取运费及其他服务报酬； 　　（５）向国际船舶运输经营者或者其他运输方式经营者为所承运的货物订舱和办理托运； 　　（６）支付港到港运费或者其他运输费用； 　　（７）集装箱拆箱、集拼箱业务； 　　（８）其他相关的业务。 　　（五）无船承运业务经营者，包括中国无船承运业务经营者和外国无船承运业务经营者。其中中国无船承运业务经营者是指依照《海运条例》和本实施细则规定取得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的中国企业法人；外国无船承运业务经营者是指依照外国法律设立并依照《海运条例》和本实施细则的相关规定取得经营进出中国港口货物无船承运业务资格的外国企业。 　　（六）国际船舶代理经营者，是指依照中国法律设立从事《海运条例》第二十六条规定业务的中国企业法人。 　　（七）国际船舶管理经营者，是指依照中国法律设立从事《海运条例》第二十七条规定业务的中国企业法人。 　　（八）国际海运货物仓储业务经营者，是指依照中国法律设立，提供海运货物仓库保管、存货管理以及货物整理、分装、包装、分拨等服务的中国企业法人。 　　（九）国际海运集装箱站与堆场业务经营者，是指依照中国法律设立，提供海运货物集装箱的堆存、保管、清洗、修理以及集装箱货物的存储、集拼、分拨等服务的中国企业法人。 　　（十）外商投资企业，是指依照中国法律投资设立的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和外商独资企业。 　　（十一）外商常驻代表机构，是指外国企业或者其他经济组织在中国境内依法设立的，为其派出机构开展宣传、推介、咨询和联络活动的非营业性机构。 　　（十二）企业商业登记文件，是指企业登记机关或者企业所在国有关当局签发的企业营业执照或者企业设立的证明文件。企业商业登记文件为复印件的，须有企业登记机关在复印件上的确认或者证明复印件与原件一致的公证文书。 　　（十三）专用发票，是指由国家税务总局批准统一印制的票据，它是证明付款人向国际船舶运输经营者或者其代理人、无船承运业务经营者或者其代理人支付运费或者其他相关费用的凭证，包括《国际海运业运输专用发票》和《国际海运业船舶代理专用发票》。 　　（十四）班轮公会协议，是指符合联合国《1974年班轮公会行动守则公约》定义的，由班轮公会成员之间以及班轮公会之间订立的各类协议。 　　（十五）运营协议，是指两个或者两个以上国际班轮运输经营者为稳定或者控制运价订立的关于在一条或者数条航线上增加或者减少船舶运力协议，以及其他协调国际班轮运输经营者共同行动的协议，包括具有上述性质内容的会议纪要；两个或者两个以上国际班轮运输经营者为提高运营效率订立的关于共同使用船舶、共同使用港口设施及其他合作经营协议和各类联盟协议、联营体协议。 　　（十六）运价协议，是指两个或者两个以上国际班轮运输经营者之间订立的关于收费项目及其费率、运价或者附加费等内容的协议，包括具有上述内容的会议纪要。 　　（十七）公布运价，是指国际班轮运输经营者和无船承运业务经营者运价本上载明的运价。运价本由运价、运价规则、承运人和托运人应当遵守的规定等内容组成。 　　（十八）协议运价，指国际班轮运输经营者与货主、无船承运业务经营者约定的运价，包括运价及其相关要素。协议运价以合同或者协议形式书面订立。 　　（十九）从业资历证明文件，是指被证明人具有3年以上从事国际海上运输或者国际海上运输辅助性经营活动经历的个人履历表。个人履历表须经公证机关公证。**第二章　国际海上运输及****其辅助性业务的经营者**　　**第四条** 在中国境内设立企业经营国际船舶运输业务，或者中国企业法人申请经营国际船舶运输业务，应当符合《海运条例》第五条规定的条件，考虑交通运输部公布的国际海运市场竞争状况和国家关于国际海上运输业发展的政策。 　　交通运输部应当在其政府网站和其他适当媒体上及时公布国际海运市场竞争状况和国家关于国际海上运输业发展的政策。上述状况和政策未经公布，不得作为拒绝申请的理由。 　　**第五条** 在中国境内设立企业经营国际船舶运输业务，或者中国企业法人申请经营国际船舶运输业务，申请人应当向交通运输部提出申请，报送相关材料，并应同时将申请材料抄报企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申请材料应当包括： 　　（一）申请书； 　 （二）可行性分析报告、投资协议；　　（三）申请人的企业商业登记文件（拟设立企业的，主要投资人的商业登记文件或者身份证明）； 　　（四）船舶所有权证书、国籍证书和法定检验证书的副本或者复印件； 　　（五）提单、客票或者多式联运单证样本；　　（六）符合交通运输部规定的高级业务管理人员的从业资格证明。 　　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自收到上述抄报材料后，应当就有关材料进行审核，提出意见，并应当自收到有关材料之日起１０个工作日内将有关意见报送交通运输部。 　　交通运输部收到申请人的申请材料后，应当在申请材料完整齐备之日起３０个工作日内按照《海运条例》第五条和第六条的规定进行审核，作出许可或者不许可的决定。决定许可的，向申请人颁发《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决定不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第六条** 中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在中国境内设立分支机构的，适用本实施细则第五条规定的程序。申请材料应当包括： 　　（一）申请书； 　　（二）可行性分析报告； 　　（三）母公司的商业登记文件； 　　（四）母公司的《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副本； 　　（五）母公司对该分支机构经营范围的确认文件； 　　（六）符合交通运输部要求的高级业务管理人员的从业资格证明。 　　中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的分支机构可为其母公司所有或者经营的船舶提供办理船舶进出港口手续、安排港口作业、接受订舱、签发提单、收取运费等服务。 　　**第七条** 在中国境内设立企业经营国际船舶代理业务，或者中国企业法人经营国际船舶代理业务，应当有固定的营业场所和必要的营业设施，其高级业务管理人员中至少应当有2人具有3年以上从事国际海上运输经营活动的经历。 　　从事国际船舶代理业务的企业，应当在开业后30日内持营业场所证明文件和有关人员资历证明文件向交通运输部备案。 　　从事国际船舶代理业务的企业变更企业信息或者不再从事国际船舶代理经营活动的，应当在信息变更或者停止经营活动的15日内，向交通运输部备案。 　　**第八条** 中国企业法人申请经营国际船舶管理业务或者在中国境内设立企业经营国际船舶管理业务，应当向拟经营业务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提出申请，申请材料应当包括： 　　（一）申请书； 　　（二）可行性分析报告、投资协议；　　（三）申请人的商业登记文件（拟设立企业的，主要投资人的商业登记文件或者身份证明）； 　　（四）固定营业场所的证明文件； 　　（五）《海运条例》第九条第（一）项规定的高级业务管理人员的从业资历证明文件； 　　（六）《海运条例》第九条第（二）项规定的人员的船长、轮机长适任证书复印件。 　　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收到申请人的申请材料后，应当在申请材料完整齐备之日起15个工作日内进行审核。材料真实且符合《海运条例》第九条规定条件的，予以资格登记，并颁发《国际海运辅助业经营资格登记证》；材料不真实或者不符合《海运条例》第九条规定条件的，不予登记，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申请人持《国际海运辅助业经营资格登记证》向企业登记机关办理企业登记，向税务部门和外汇管理部门指定的银行办理相关手续。 　　**第九条** 国际船舶管理经营者在中国境内的分支机构经营相关业务的，应当符合《海运条例》第九条的规定，并按照《海运条例》第十条和本实施细则第八条的规定进行登记。登记申请材料应当包括： 　　（一）申请书； 　　（二）可行性分析报告； 　　（三）母公司的商业登记文件； 　　（四）母公司的《国际海运辅助业经营资格登记证》副本； 　　（五）母公司确定该分支机构经营范围确认文件； 　　（六）营业场所的证明文件； 　　（七）《海运条例》第九条规定的人员的从业资历或者资格的证明文件。 　　**第十条** 国际船舶运输经营者申请经营进出中国港口国际班轮运输业务，应当向交通运输部提出申请，并报送《海运条例》第十五条规定的材料。交通运输部应当按照《海运条例》第十五条的规定进行审核。予以登记的，颁发《国际班轮运输经营资格登记证》。申请材料不真实、不齐备的，不予登记，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国际船舶运输经营者依法取得经营进出中国港口国际班轮运输业务资格后，交通运输部在其政府网站公布国际班轮运输经营者名称及其提单格式样本。 　　**第十一条** 申请办理无船承运业务经营者提单登记的，应当向交通运输部提出提单登记申请，报送相关材料，并应当同时将申请材料抄报企业所在地或者外国无船承运业务经营者指定的联络机构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申请材料应当包括： 　　（一）申请书； 　　（二）可行性分析报告； 　　（三）企业商业登记文件； 　　（四）提单格式样本； 　　（五）保证金已交存的银行凭证复印件。 　　申请人为外国无船承运业务经营者的，还应当提交本实施细则第二十五条规定的其指定的联络机构的有关材料。 　　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自收到上述抄报材料后，应当就有关材料进行审核，提出意见，并应当自收到抄报的申请材料之日起7个工作日内将有关意见报送交通运输部。 　　交通运输部收到申请人的材料后，应当在申请材料完整齐备之日起15个工作日内按照《海运条例》第七条和第八条的规定进行审核。审核合格的，予以提单登记，并颁发《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登记证》；不合格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并告知理由。 　　中国的申请人取得《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登记证》，并向原企业登记机关办理企业相应登记手续后，方可从事无船承运业务经营活动。 　　**第十二条** 外国无船承运业务经营者按照外国法律已取得经营资格且有合法财务责任保证的，在按照《海运条例》和本实施细则申请从事进出中国港口无船承运业务时，可以不向中国境内的银行交存保证金。但为了保证外国无船承运业务经营者清偿因其不履行承运人义务或者履行义务不当所产生的债务以及支付罚款，满足《海运条例》第八条第三款的规定，该外国无船承运业务经营者的政府主管部门与中国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就财务责任保证实现方式签订协议。 　　**第十三条** 没有在中国港口开展国际班轮运输业务，但在中国境内承揽货物、签发提单或者其他运输单证、收取运费，通过租赁国际班轮运输经营者船舶舱位提供进出中国港口国际货物运输服务；或者利用国际班轮运输经营者提供的支线服务，在中国港口承揽货物后运抵外国港口中转的，应当按照本实施细则的有关规定，取得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但有《海运条例》第十四条第三款规定情形的除外。 　　**第十四条** 中国的无船承运业务经营者在中国境内的分支机构，应当按照《海运条例》第八条第二款的规定交纳保证金，并按照本实施细则第十一条的规定进行登记，取得《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登记证》。申请登记应当提交下列材料： 　　（一）申请书； 　　（二）母公司的企业商业登记文件； 　　（三）母公司的《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登记证》副本； 　　（四）母公司确认该分支机构经营范围的确认文件； 　　（五）保证金已交存的银行凭证复印件。 　　**第十五条** 无船承运业务经营者申请提单登记时，提单台头名称应当与申请人名称相一致。 　　提单台头名称与申请人名称不一致的，申请人应当提供说明该提单确实为申请人制作、使用的相关材料，并附送申请人对申请登记提单承担承运人责任的书面申明。 　　**第十六条** 无船承运业务经营者使用两种或者两种以上提单的，各种提单均应登记。 　　国际班轮运输经营者和无船承运业务经营者的登记提单发生变更的，应当于新的提单使用之日起15日前将新的提单样本格式向交通运输部备案。 　　**第十七条** 无船承运业务经营申请者交纳保证金并办理提单登记，依法取得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后，交通运输部在其政府网站公布无船承运业务经营者名称及其提单格式样本。 　**第十八条** 无船承运业务经营者应当依法在交通运输部指定的商业银行开设的无船承运业务经营者专门账户上交存保证金，保证金利息按照中国人民银行公布的活期存款利率计息。 　　**第十九条** 无船承运业务经营者交存的保证金，受国家法律保护。除下列情形外，保证金不得动用： 　　（一）因无船承运业务经营者不履行承运人义务或者履行义务不当，根据司法机关已生效的判决或者司法机关裁定执行的仲裁机构裁决应当承担赔偿责任的； 　　（二）被交通运输主管部门依法处以罚款的。 　　有前款（一）、（二）项情形需要从保证金中划拨的，应当依法进行。 　　无船承运业务经营者的保证金不符合《海运条例》规定数额的，交通运输部应当书面通知其补足。无船承运业务经营者自收到交通运输部书面通知之日起30日内未补足的，交通运输部应当按照《海运条例》第十三条的规定取消其经营资格。 　　**第二十条** 无船承运业务经营者被交通运输部依法取消经营资格、申请终止经营或者因其他原因终止经营的，可向交通运输部申请退还保证金。交通运输部应将该申请事项在其政府网站上公示30日。 　　在公示期内，有关当事人认为无船承运业务经营者有本实施细则第十九条第一款第（一）项情形需要对其保证金采取保全措施的，应当在上述期限内取得司法机关的财产保全裁定。自保证金被保全之日起，交通运输部依照《海运条例》对保证金账户的监督程序结束。有关纠纷由当事双方通过司法程序解决。 　　公示期届满未有前款规定情形的，交通运输部应当通知保证金开户银行退还无船承运业务经营者保证金及其利息，并收缴该无船承运业务经营者的《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登记证》。 　　**第二十一条** 中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中国无船承运业务经营者、国际船舶管理经营者有下列变更情形之一的，应当向原资格许可、登记机关备案： 　　（一）变更企业名称； 　　（二）企业迁移； 　　（三）变更出资人； 　　（四）歇业、终止经营。 　　变更企业名称的，由原资格许可、登记机关换发相关经营许可证或者经营资格登记证；企业终止经营的，应当将有关许可、登记证书交回原许可、登记机关。 　　**第二十二条** 除《海运条例》和本实施细则第四章规定的外商投资企业外，经营国际海运货物仓储、国际海运集装箱站与堆场业务的经营者应当自开始从事上述经营活动之日起30日内将有关情况向企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报备。**第三章　国际海上运输及其辅助性业务经营活动**　　**第二十三条** 国际班轮运输经营者新开或者停开国际班轮运输航线，或者变更国际班轮运输船舶、班期的，应当按照《海运条例》第十七条的规定在交通运输部指定媒体上公告，并按规定报备。 　　**第二十四条** 中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增加运营船舶，包括以光船租赁方式租用船舶增加运营船舶的，应当于投入运营前15日向交通运输部备案，取得备案证明文件。备案材料应当载明公司名称、注册地、船名、船舶国籍、船舶类型、船舶吨位、拟运营航线。 　　交通运输部收到备案材料后，应当在3个工作日内出具备案证明文件。 　　**第二十五条** 在中国港口开展国际班轮运输业务的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以及在中国委托代理人提供进出中国港口国际货物运输服务的外国无船承运业务经营者，应当在中国境内委托一个联络机构，负责代表该外国企业与中国政府有关部门就《海运条例》和本实施细则规定的有关管理及法律事宜进行联络。联络机构可以是该外国企业在中国境内设立的外商投资企业或者常驻代表机构，也可以是其他中国企业法人或者在中国境内有固定住所的其他经济组织。委托的联络机构应当向交通运输部备案，并提交下列文件： 　　（一）联络机构说明书，载明联络机构名称、住所、联系方式及联系人； 　　（二）委托书副本或者复印件； 　　（三）委托人与联络机构的协议副本；　　（四）联络机构的工商登记文件复印件。 　　联络机构为该外国企业在中国境内的外商投资企业或者常驻代表机构的，不须提供本条第一款第（二）项、第（三）项文件。 　　联络机构或者联络机构说明书所载明的事项发生改变的，应当自发生改变之日起15日内向交通运输部备案。 　　**第二十六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使用国际班轮运输经营者和无船承运业务经营者已经登记的提单。 　　**第二十七条** 无船承运业务经营者需要委托代理人签发提单或者相关单证的，应当委托依法取得经营资格的国际船舶运输经营者、无船承运业务经营者和国际海运辅助业务经营者代理上述事项。 　　前款规定的经营者不得接受未办理提单登记并交存保证金的无船承运业务经营者的委托，为其代理签发提单。 　　**第二十八条** 国际班轮运输经营者与货主和无船承运业务经营者协议运价的，应当采用书面形式。协议运价号应当在提单或者相关单证上显示。 　　**第二十九条** 国际船舶运输经营者不得接受未办理提单登记并交纳保证金的无船承运业务经营者提供的货物或者集装箱。 　　**第三十条** 国际班轮运输经营者委托代理人接受订舱、代签提单、代收运费等项业务的，委托的代理人应当是依法成立的国际船舶代理经营者。 　　**第三十一条** 国际班轮运输经营者和无船承运业务经营者应当将其在中国境内的船舶代理人、签发提单代理人在交通运输部指定的媒体上公布。公布事项包括代理人名称、注册地、住所、联系方式。代理人发生变动的，应当于有关代理协议生效前７日内公布上述事项。 　　国际班轮运输经营者、无船承运业务经营者应当及时将公布代理事项的媒体名称向交通运输部备案。 　　**第三十二条** 国际船舶运输经营者之间订立的涉及中国港口的班轮公会协议、运营协议、运价协议等，应当自协议订立之日起15日内，按下列规定向交通运输部备案： 　　（一）班轮公会协议，由班轮公会代表其所有经营进出中国港口海上运输的成员备案。班轮公会备案时，应当同时提供该公会的成员名单。 　　（二）国际船舶运输经营者之间订立的运营协议、运价协议，由参加订立协议的国际船舶运输经营者分别备案。 　　**第三十三条** 下列经营者在中国境内收取运费、代为收取运费以及其他相关费用，应当向付款人出具专用发票： 　　（一）中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及其分支机构； 　　（二）中国无船承运业务经营者及其分支机构； 　　（三）国际船舶代理经营者及其分支机构； 　　（四）《海运条例》第三十条规定的企业。 　　前款所列经营者应当向公司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办理专用发票使用证明后，向公司所在地的税务机关申请领取专用发票。国家税务总局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三十四条** 国际船舶管理经营者应当根据合同的约定和国家有关规定，履行有关船舶安全和防止污染的义务。 　　**第三十五条** 经营进出中国港口国际班轮运输业务的国际班轮运输经营者，应当填报《中华人民共和国海上国际运输业信息表（航运公司基本情况）》《中华人民共和国海上国际运输业信息表（航运公司集装箱出口重箱运量）》和《中华人民共和国海上国际运输业信息表（航运公司集装箱进口重箱运量）》，于当年3月31日前报送交通运输部。 　　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的上述材料由其委托的联络机构报送。 　　**第三十六条** 中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国际船舶代理经营者以及国际集装箱运输港口经营人，应当分别填报《中华人民共和国海上国际运输业信息表（航运公司基本情况）》《中华人民共和国海上国际运输业信息表（国际船舶代理）》和《中华人民共和国海上国际运输业信息表（港口集装箱吞吐量）》，于当年3月15日前报送公司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 　　各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将上述信息表及其汇总信息于当年3月31日前报送交通运输部。 　　**第三十七条** 国际船舶代理经营者、国际船舶管理经营者、国际海运货物仓储业务经营者以及国际集装箱站与堆场业务经营者，不得有下列行为： 　　（一）以非正常、合理的收费水平提供服务，妨碍公平竞争； 　　（二）在会计账簿之外暗中给予客户回扣，以承揽业务； 　　（三）滥用优势地位，限制交易当事人自主选择国际海运辅助业务经营者，或者以其相关产业的垄断地位诱导交易当事人，排斥同业竞争； 　　（四）其他不正当竞争行为。 　　**第三十八条** 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以及外国国际海运辅助企业的常驻代表机构不得从事经营活动，包括不得： 　　（一）代表其境外母公司接受订舱，签发母公司提单或者相关单证； 　　（二）为母公司办理结算或者收取运费及其他费用； 　　（三）开具境外母公司或者其母公司在中国境内设立的《海运条例》第三十条规定的企业的票据； 　　（四）以托运人身份向国际班轮运输经营者托运货物； 　　（五）以外商常驻代表机构名义与客户签订业务合同。**第四章　外商投资经营国际海上运输及其辅助性业务**　　**第三十九条** 设立中外合资、合作经营企业经营国际船舶运输业务，应当通过拟设立企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向交通运输部提出申请。申请材料应当包括： 　　（一）申请书； 　　（二）可行性分析报告； 　　（三）合资或者合作协议； 　　（四）投资者的企业商业登记文件或者身份证件； 　　（五）符合交通运输部规定的高级业务管理人员的从业资格证明。 　　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自收到完整齐备的材料之日起１０个工作日内将申请材料及意见转报交通运输部。 　　交通运输部应当自收到转报的上述材料和意见之日起３０个工作日内，按照《海运条例》第二十九条第二款、第三款和第四款的规定以及交通运输部公布的国际海运市场竞争状况和国家关于国际海上运输业发展的政策进行审核，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发给批准文件；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获得批准的申请人应当持交通运输部批准文件，按照国家有关外商投资企业的法律、法规的要求，到有关部门办理相应的设立外商投资企业的审批手续。取得相应的审批手续后，应当持有关部门许可设立企业的文件和本实施细则第五条第一款（四）至（六）项的相关材料，按照本实施细则第五条规定的程序向交通运输部领取相应的《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 　**第四十条** 设立《海运条例》第三十条规定的外商投资企业，应当按照交通运输部和对外贸易经济合作部的有关规定办理。 　　**第四十一条** 设立外商投资企业经营国际船舶代理业务，应当通过拟设立企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向交通运输部提交符合本实施细则第七条第一款规定条件的申请材料。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收到完整齐备的上述材料后，应当于１０个工作日内将有关材料及意见转报交通运输部。 　　交通运输部应当自收到转报的上述材料和意见之日起３０个工作日内，按照本实施细则第七条第一款的规定进行审核，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发给批准文件；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获得批准的申请人应当持交通运输部批准文件，按照国家有关外商投资企业的法律、法规的要求到有关部门办理相应的设立外商投资企业的审批手续。取得相应的批准文件后，到交通运输部领取《国际船舶代理经营资格登记证书》。 　　**第四十二条** 设立外商投资企业经营国际船舶管理业务，应当通过拟设立企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向交通运输部提交本实施细则第八条规定的申请材料。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收到完整齐备的上述材料后，应当于１０个工作日内将有关材料及意见转报交通运输部。 　　交通运输部应当自收到转报的上述材料和意见之日起３０个工作日内，按照《海运条例》第九条的规定进行审核，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发给批准文件；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获得批准的申请人应当持交通运输部批准文件，按照国家有关外商投资企业的法律、法规的要求到有关部门办理相应的设立外商投资企业的审批手续。取得相应的审批手续后，应当持有关部门的批准文件按照本实施细则第八条规定的程序向企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办理登记，领取《国际海运辅助业经营资格登记证》。 　　**第四十三条** 经营国际海运货物仓储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固定的营业场所； 　　（二）有与经营范围相适应的仓库设施； 　　（三）高级业务管理人员中至少2人具有3年以上从事相关业务的经历；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四十四条** 经营国际海运集装箱站及堆场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固定的营业场所； 　　（二）有与经营范围相适应的车辆、装卸机械、堆场、集装箱检查设备、设施； 　　（三）高级业务管理人员中至少2人具有3年以上从事相关业务的经历；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四十五条** 设立外商投资企业，经营国际海运货物仓储业务或者设立中外合资、合作企业经营国际集装箱站与堆场业务，应当通过拟设立企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向交通运输部提出申请。申请材料应当包括： 　　（一）申请书； 　　（二）可行性分析报告； 　　（三）合资或者合营协议； 　　（四）投资者的企业商业登记文件或者身份证件。 　　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收到完整齐备的上述材料后，应当于１０个工作日内将有关材料及意见转报交通运输部。 　　交通运输部应当在收到转报的上述材料和意见之日起３０个工作日内，按照本实施细则第四十三条或者第四十四条的规定进行审核，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予以登记，并发给相应的批准文件；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获得批准的申请人应当持交通运输部批准文件，按照国家有关外商投资企业的法律、法规的要求到有关部门办理设立外商投资企业的审批手续。取得相应的批准文件后，向交通运输部办理登记，换领《国际海运辅助业经营资格登记证》。 　　**第四十六条** 国际海运货物仓储业务经营者、国际集装箱站与堆场业务经营者，须持交通运输部颁发的资格登记证明文件，向监管地海关办理登记手续后，方可存放海关监管货物或者集装箱。**第五章　调查与处理**　　**第四十七条** 利害关系人认为国际海上运输业务经营者、国际海运辅助业务经营者有《海运条例》第三十二条和本实施细则第三十七条规定情形的，可依照《海运条例》第三十二条的规定请求交通运输部实施调查。请求调查时，应当提出书面调查申请，并阐述理由，提供必要的证据。 　　交通运输部对调查申请应当进行评估，在自收到调查申请之日起60个工作日内作出实施调查或者不予调查的决定： 　　（一）交通运输部认为调查申请理由不充分或者证据不足的，决定不予调查并通知调查申请人。申请人可补充理由或者证据后再次提出调查申请。 　　（二）交通运输部根据评估结论认为应当实施调查或者按照《海运条例》第三十二条规定自行决定调查的，应当将有关材料和评估结论通报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和价格部门。 　　**第四十八条** 调查的实施由交通运输部会同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和价格部门（以下简称调查机关）共同成立的调查组进行。 　　调查机关应当将调查组组成人员、调查事由、调查期限等情况通知被调查人。被调查人应当在调查通知送达后３０日内就调查事项作出答辩。 　　被调查人认为调查组成员同调查申请人、被调查人或者调查事项有利害关系的，有权提出回避请求。调查机关认为回避请求成立的，应当对调查组成员进行调整。 　　**第四十九条** 被调查人接受调查时，应当根据调查组的要求提供相关数据、资料及文件等。属于商业秘密的，应当向调查组提出。调查组应当以书面形式记录备查。 　　调查机关和调查人员对被调查人的商业秘密应当予以保密。 　　被调查人发现调查人员泄露其商业秘密并有充分证据的，有权向调查机关投诉。 　　**第五十条** 调查机关对被调查人“低于正常、合理水平运价”的认定，应当考虑下列因素： 　　（一）同一行业内多数经营者的运价水平以及与被调查人具有同等规模经营者的运价水平； 　　（二）被调查人实施该运价水平的理由，包括成本构成、管理水平和盈亏状况等； 　　（三）是否针对特定的竞争对手并以排挤竞争对手为目的。 　　**第五十一条** 调查机关对“损害公平竞争”或者“损害交易对方”的认定，应当考虑下列因素： 　　（一）对托运人自由选择承运人造成妨碍； 　　（二）影响货物的正常出运； 　　（三）以账外暗中回扣承揽货物，扭曲市场竞争规则。 　　**第五十二条** 调查机关作出调查结论前，可举行专家咨询会议，对“损害公平竞争”或者“损害交易对方”的程度进行评估。 　　聘请的咨询专家不得与调查申请人、被调查人具有利害关系。 　　**第五十三条** 调查结束时，调查机关应当作出调查结论，并书面通知调查申请人和被调查人： 　　（一）基本事实不成立的，调查机关应当决定终止调查； 　　（二）基本事实存在但对市场公平竞争不造成实质损害的，调查机关可决定不对被调查人采取禁止性、限制性措施； 　　（三）基本事实清楚且对市场公平竞争造成实质损害的，调查机关应当根据《海运条例》的规定，对被调查人采取限制性、禁止性措施。 　　**第五十四条** 调查机关在作出采取禁止性、限制性措施的决定前，应当告知当事人有举行听证的权利；当事人要求举行听证的，应当在自调查机关通知送达之日起10日内，向调查机关书面提出；逾期未提出听证请求的，视为自动放弃请求听证的权利。 　　**第五十五条** 就本实施细则第三十七条所列情形实施调查的，调查组成员中应当包括对被调查人的资格实施登记的有关省、自治区、直辖市交通主管部门的人员。 　　对有本实施细则第三十七条第（三）项所列违法行为并给交易当事人或者同业竞争者造成实质损害的，调查机关可采取限制其在一定时期内扩大业务量的限制性措施。**第六章　法律责任**　　**第五十六条** 违反《海运条例》和本实施细则的规定应当予以处罚的，交通运输部或授权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按照《海运条例》第六章和本章的规定予以处罚。 　　**第五十七条** 外商常驻代表机构有本实施细则第三十八条规定情形的，交通运输部或者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可将有关情况通报有关工商行政管理部门，由工商行政管理部门按照《海运条例》第四十九条的规定处罚。 　　**第五十八条** 班轮公会协议、运营协议和运价协议、国际船舶代理经营者未按规定向交通运输部备案的，由交通运输部依照《海运条例》第四十五条的规定，对本实施细则第七条、第三十二条规定的备案人实施处罚。班轮公会不按规定报备的，可对其公会成员予以处罚。 　　**第五十九条** 调查人员违反规定，泄露被调查人保密信息的，依法给予行政处分；造成严重后果，触犯刑律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七章　附　则**　　**第六十条** 《海运条例》和本实施细则规定的许可、登记事项，申请人可委托代理人办理。代理人办理委托事项的，应当提供授权委托书。外国申请人或者投资者提交的公证文书，应当由申请人或者投资者所在国公证机关或者执业律师开出。 　　本实施细则所要求的各类文字资料应当用中文书写，如使用其他文字的，应随附中文译文。 　　**第六十一条** 对《海运条例》和本实施细则规定的备案事项的具体要求、报备方式和方法应当按照交通运输部的规定办理。 　　**第六十二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投资者在内地投资从事国际海上运输和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业务，比照适用《海运条例》第四章和本实施细则第四章的有关规定。 　　**第六十三条** 《海运条例》第十八条规定的公布运价和协议运价备案的具体办法，由交通运输部另行规定。 　　**第六十四条** 经营港口国际海运货物装卸、港口内国际海运货物仓储业务和国际海运集装箱码头和堆场业务的，按国家有关港口管理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 　　**第六十五条** 本实施细则自2003年3月1日起施行。交通部1985年4月11日发布的《交通部对从事国际海运船舶公司的暂行管理办法》、1990年3月2日发布的《国际船舶代理管理规定》、1990年6月20日发布的《国际班轮运输管理规定》、1992年6月9日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上国际集装箱运输管理规定实施细则》和1997年10月17日发布的《外国水路运输企业常驻代表机构管理办法》同时废止。 |